



농림축산식품부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「축산계열화사업 등급평가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」 고시 일부개정 알림

1. 「축산계열화사업 등급평가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」 고시 일부개정(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3-14호, 2023.3.2.)과 관련됩니다.
 2. 우리 부는 2022년도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등급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에 따라 현행 평가지표의 미흡사항을 보완하고, 원활한 평가업무 수행을 위해 「축산계열화사업 등급평가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」 고시를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 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* 고시개정 전문은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(www.mafra.go.kr → 알림소식 → 공지·공고)에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「축산계열화사업 등급평가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」 고시 개정 전문 1부. 끝.

농림축산식품부장관



수신자 농림축산식품부 전체과,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, 중앙행정기관(18부, 5처, 18청, 2원, 7위원회), 각 시도(나 01-18), 관련 생산자단체

주무관	안준영	서기관	이상훈	축산경영과장	전결 2023.3.2. 정재환
협조자					
시행	축산경영과-1240	(2023. 3. 3.)	접수		
우	30064	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, (어진동)	/ http://www.mafra.go.kr		
전화번호	044-201-2339	팩스번호	0448680127	/ junyoung.ahn@korea.kr	/ 대한민국 공개